

청년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2019.04.23.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9.04.23.(화)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쉐어형 주택의 경우 담보문제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대출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공고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2018.11.22.시행)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므로 **변경된 신청자격·임대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일정

주택공개	신청접수	서류제출	소득·자산 조회심사	입주자 발표	계약	입주
2019. 04.26.(금) - 04.30.(화) *주말(토·일) 제외	①2019. 05.02.(목) 10:00 05.03.(금) 17:00 ②2019. 05.07.(화) 10:00-17:00 *인터넷접수 *4월(토)~6월(월) 접수 불가	2019. 05.13.(월) - 05.15.(수) *서류심사대상자 10일(금) 발표 *17일(금) 모집까지 인정	~6주 이상 소요	2019. 07.19.(금) *18:00 예정	2019. 07.24.(수) - 07.26.(금)	2019. 07.31.(수) - 09.30.(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시간)은 해당 페이지 참조

□ 공급대상 : 다가구 및 원룸 잔여세대 137실(명)

주택유형	수량(실)		
	계	남	여
합계	137	60	77
다가구(쉐어형)	100	46	54
원룸	37	14	23

※ 동호, 면적, 순위별 임대료 등 공급주택 상세내역은 [첨부]주택목록 참고

- 다가구(쉐어)형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
- 다가구형 표기 전용면적은 세대 전체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각 방(실)의 면적임
-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차지원 불가
- 임대료 외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음(계약 후 센터 문의)
- 최초 공급 시 지정한 성별에 따라 재공급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공급 실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기존 희망하우징 및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 기간 합산하여 **최장 6년**, 계약기간 중 퇴거 시 2년 거주로 간주)
-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원룸 및 단독거주형 다가구 입주자만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갱신)

□ 재계약

- 최초 입주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 가능하며 센터에서 체결
- 입주 자격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자격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
- 재계약 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임대료 안내

- 1·2순위와 3·4순위의 임대료 차등 적용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 별도 적용
- 상호전환 : 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계약 후~입주 전 센터에서 신청(이후에는 년 1회에 한하여 매달 25일~말일 전환 신청 가능)
- 정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첨부]주택목록 참조

순위	1·2 순위		3·4 순위		비 고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		시세의 50%		*임대료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적 용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료	
청년	기본보증금	기본임대료*	목록 참조	목록 참조*	
대학생·취업준비생	100만원	목록 참조*	200만원	목록 참조*	

기본 자격

- 공고일(2019.04.23.) 현재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광역시 포함)·군 출신(이하 '타 지역 출신', 4순위는 무관)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본인)

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출신이라 함은 부모(모두)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인 경우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포함 ㉡ 부모 이혼 시: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 등본 분리 전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해외거주 시: 국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 미등재 시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 제출하면 타 지역 출신으로 인정 (제출서류: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외교부 및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부모 모두 사망 시: 출신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 사망 또는 말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유의 사항	<p>※ 기혼자-재외국민은 신청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순위 신청자의 경우 출신 지역 제한 없음 □ 다음의 경우 해당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입주 가능 (최종 입주자 발표 후 해당자 별도 통보 및 입주 전 센터 최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타 청년 매입임대주택 포함)의 기 당첨자인 경우 ② 부모가 서울소재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 가능 (최종 입주자 발표 후 해당자 별도 통보 및 입주 전 센터 최종 확인)

□ 신청 유형

①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해당년도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사람

인정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기 타	<p>※ 졸업유예자·직장 재직 대학생 제외(졸업유예자 및 대학원생은 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으로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경우 입주일과 무관하게 대학생으로 신청 (모든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만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입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입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 □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재학 중인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②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인정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 기술대학) ※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인정 고등·고등기술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등) ※ 중학교·해외고등학교는 제외
직장 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재직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유형을 기준으로 판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고의 경우 2017.04.24. 이후 졸업 및 중퇴자 지원 가능 □ 자격요건 충족 시 대학원 재학여부 무관 □ 졸업예정 증명서로 취업준비생 증빙 불가(모든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만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수료증 제출) □ 졸업(중퇴)한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③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사람

나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 기준 (해당공고의 경우 1979.04.24.~2000.04.23. 출생자 지원 가능)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재직여부 무관(순위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 격	상세 요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장애인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 단,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해당 세대의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 단,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해당 세대의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99만원 이하)
2순위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며 65세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일반 (월평균 소득 5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 단,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해당 세대의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99만원 이하)
3순위	장애인 가정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 단,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해당 세대의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일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 단,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본인의 총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장애인 가정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 단,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본인의 총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4순위 (지역 제한 없음)	일반 (월평균 소득 80% 이하)	□ 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원을 보유 한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 단,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해당 세대의 총자산 23,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99만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안내

구 분	기 준					
조 회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 소득·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 를 조회 후 입주자로 선정함					
소 득	기 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2,700,907원 이하	3,082,601원 이하	3,349,933원 이하	3,674,446원 이하
		70%이하	3,781,270원 이하	4,315,641원 이하	4,689,906원 이하	5,144,224원 이하
		80%이하	4,321,451원 이하	4,932,162원 이하	5,359,892원 이하	5,879,113원 이하
		100%이하	5,401,814원 이하	6,165,202원 이하	6,699,865원 이하	7,348,891원 이하
		120%이하	6,482,177원 이하	7,398,242원 이하	8,039,838원 이하	8,818,669원 이하
		150%이하	8,102,721원 이하	9,247,803원 이하	10,049,798원 이하	11,023,337원 이하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 포함(임신진단서 제출)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가구당 월평균 소 득 100%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						
총자산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범위	해당세대*	본인과 부모		본인(해당세대**)	
	기준	70%이하	50%(100%)이하	100%(150%)이하	80%(100%)이하	
	기준	19,6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23,200만원 이하	
□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부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자동차	범위	해당세대*	본인과 부모	본인	해당세대**	
	기준	2,499만원 이하		무소유	2,499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무주택	범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해당 세대	□ 1순위* :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시 부 또는 모 에 한함) 및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4순위** : 본인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 주택공개

공개기간	□ 2019.04.26.(금) - 2019.04.30.(화) [공개시간: 10:00-17:00, 주말(토~일) 제외]
공개절차	□ 입주희망 주택의 관할 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주택 공개일 협의 후 해당주택 방문(개별 임의 방문 불가) □ 권역별 센터 연락처 : 「추가 안내」 참고
유의사항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능(해당 절차 이후 입주 전까지 추가 공개 불가) □ 셰어하우스 특성 상 대부분 기 입주자가 있으므로 주택 공개일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접수(인터넷 청약)

기간	□ ①2019.05.02.(목) 10:00 - 2019.05.03.(금) 17:00 □ ②2019.05.07.(화) 10:00-17:00 [4일(토) - 6일(월)은 신청접수 불가, 접수기간에 따른 차이 없음]
방법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유의사항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서로 인증 가능 □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반드시 별도 보관

□ 서류제출

※ 서류제출대상자에게 별도 등기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명단 게시 및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SMS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9.05.10.(금) 18:00 이후
	방법	□ 문자(SMS) 전송 및 홈페이지(공지사향) 명단 게시(등기 안내문 발송×)
	안내	□ 신청 시 기입한 사항을 바탕으로 3배수 내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음 전형 진행 □ 순위 간 경쟁 시 신청 순위 우선,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의 방법에 의함
서류제출	기한	□ 발송: 2019.05.13.(월) - 2019.05.15.(수) 이내 소인분 인정 □ 마감: 2019.05.17.(금) 도착분까지 인정
	방법	□ 등기 우편 제출(방문제출×, 일반우편×)
	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주택부 청년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유의사항	□ 등기 외의 방법(일반우편 포함)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간 이외 소인(13일 이전 포함)분은 접수하지 않음(별도 안내 없이 탈락)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음 □ 서류 부족 제출자의 경우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 1회,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 □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서로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 □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 발급 기관으로 문의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반납하지 않음
(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공통 제출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 서류	내 용	발 급
자격 증명	□ 재학생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휴학생 : 휴학증명서, 공사양식 각서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 (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공사양식 각서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 (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해당교육 기관 -첨부파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준비생 자격 확인 서류 ㉠ 졸업자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유예자 : 수료증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건강보험 공단 (1577-1000) -해당교육 기관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서명 범위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안내」 참고)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포함 ㉡ 부모 이혼 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 등본 분리 전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서명 □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불임양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부모 세대 분리 시 : 분리된 부, 모 모두 추가 제출 ㉡ 부모 이혼 시 :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부, 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 등본 분리 전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추가 제출 ㉢ 부모 해외 거주 및 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해외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성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자격별 제출서류

본인의 신청 자격(순위)에 따른 서류 제출

해당 자격 [㉠]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①	<p>①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p> <p>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① 전용 입식부엌이나 전용수세식 화장실 미구비 주택 거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주소 확인 사진 □ 부엌 및 화장실 사진(이후 추가 증빙 요구) <p>②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해당 가구원 전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주민센터 -세무서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퇴거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의장 -구청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이하 전형 신청자 ①②③④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서명 범위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안내」 참고)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포함 ㉡ 부모 이혼 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 등본 분리 전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서명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p>	-붙임양식
	장애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 - 반드시 등록일 기재 	-주민센터
	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중 장애인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4순위 전원 □ 제출 누락 및 오작성이 가장 빈번한 서류로 공고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당자는 반드시 정확히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 서류	내 용 (해당자만 제출)	발 급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이혼(사별) 시 함께 거주하는 부모 기준 제출(상세 표시)	-주민센터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초본	□ 이혼한 부모가 등본 상 모두 미등재 시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주민센터
임신진단서	□ 태아를 (월평균 소득기준)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 및 진료내역확인서 인정 불가)	-의료기관

□ 소득 및 자산 소명

일 시	□ 2019.07.09.(화) - 2019.07.15.(월) [소득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 법	□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에 한하여 진행됨 □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 송부 □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함

□ 최종입주자 발표

일 시	□ 2019.07.19.(금) 18:00		
방 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게시 및 SMS 개별 안내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다음의 방법으로 최종입주자를 선정함		
	순위	순위 간	순위 내
	1순위	신청순위 우선	추첨
	2순위		추첨
	3순위		추첨
	4순위		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대상자 전원에게 발표 사실을 문자(SMS) 안내하며, 최종 입주자에게는 계약 안내문을 등기 전송 □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호실 이외(공실여부 관계없음)로 호실 변경 입주는 절대 불가 □ 월 정기 공고 특성 상 예비자는 선발하지 않음 □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사유가 있을 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함 			

□ 계약

일시	□ 2019.07.24.(수) - 2019.07.26.(금) [계약시간 10:00-16:00]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계약체결	□ 계약 시 구비서류(아래) 지참 후 방문계약 □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의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증빙 지참 하여 방문(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3자(대리인)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인터넷 뱅킹) ④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공사 소정양식) ⑤ 서약서(무주택 및 당첨자격 확인 서약)		
	직계가족 또는 제3자(대리인) 내방 시	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①,②,③, ④,⑤) 외	직계가족 대리 시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대리인) 대리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 날인)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임대료-보증금 전환	□ 계약은 보증금-임대료 전환 전의 계약서 상 금액으로만 가능하며 보증금-임대료 전환은 계약 완료 후 입주 전까지 관할 센터에서 가능 □ 기본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이후에는 년 1회에 한하여 매월 25일-말일에 가능 □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역전환)은 불가			

□ 입주

기간	□ 2019.07.31.(수) - 2019.09.30.(월), 두 달간			
안내	□ 관할 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약간 조정될 수 있음 □ 계약 시 수령한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하며, 반드시 입주 전 해당권역 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 협의 □ 다가구형(공동거주형, 쉼어형) 주택의 경우 담보 설정 등의 이유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나 이는 공사 지침이 아니므로 관련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바람 □ 공사에서 별도 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며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 및 면적) 수정(동호 및 면적)은 불가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공급하는 임대주택이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가 가능(대출 여부를 조회하여 대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입주 시 센터에 상환 증빙서류를 제출)			

□ 연락처

※ 센터 위치 이전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위치 직접 확인 후 방문

기 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주 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강남서초센터	강남구, 서초구	(02)2086-9800~1
	강남구 논현로 417 화원빌딩 6층	
강서센터	강서구	(02)2657-8100~1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 10단지 M-Tower(오피스동) 2층	
관악동작센터	관악구, 동작구	(02)828-5100~1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상도SH빌 임대상가 101호	
노원도봉센터	노원구, 도봉구	(02)3399-0000~1
	노원구 월계로 372 월계사슴1단지아파트 상가 2층	
동대문광진중랑센터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02)490-1700~1
	중랑구 봉화산로 165	
마포용산센터	마포구, 용산구	(02)380-0100~1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 상암월드컵파크프라자 501호~505호	
성동중구센터	성동구, 중구	(02)6909-9300~1
	중구 다산로 210 흥진빌딩 8층	
성북강북센터	성북구, 강북구	(02)944-8000~1
	성북구 화랑로 35 KT월곡빌딩	
송파센터	송파구	(02)3400-4700~1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0층(T-10006호)	
강동센터	강동구	(02)3400-4700~1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0층(T-10006호)	
양천영등포센터	양천구, 영등포구	(02)2620-6700~1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106호	
은평서대문종로센터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02)6910-9400~1
	은평구 진관3로 37 에코테라스 3층	
구로금천센터	구로구	(02)2620-6700~1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106호	
	금천구	(02)828-5100~1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상도SH빌 임대상가 101호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안내

주택 유형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구분
다가구	공동거주형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책상, 의자, 옷장	공용 사용
	단독거주형		개인별 사용
원룸			

※ 에어컨은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구성품이 다를 수 있음.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소득 및 자산 출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재 산 소 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 타 소 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 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 타 자 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 용 자 산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 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임대보증금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자료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구 분	총자산 기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div>

<p>금융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일반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p>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구분	유의사항
<p>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주택(실)만 신청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등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하고,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금번 공고의 다가구형은 모두 공동거주형(쉐어형)입니다. -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또는 입학 예정자의 자격으로 신청한 자는 공사 양식 각서(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서약) 및 재학증명서(복학 후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및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로 등기와 SMS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택공개 이후 입주 전까지 추가 주택알람이 불가) - 동일 순위 기준으로 신청유형 간(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에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 차이가 있을 뿐 전체 임대료 수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청년 유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기본(차등) 보증금 및 임대료만 적용 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혼자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부모님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 심사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모집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본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합니다.
<p>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전형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미제출 탈락에 대한 책임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형 종료 후 반납하지 않고 일괄 폐기 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신청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에 한하여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됩니다.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발표일 이전에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으며 모든 신청자의 전형 종료 후(소명 절차 등) 일괄 발표 합니다. - 월 정기 공고 특성 상 예비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계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입주대상자라도 소득기준·자산기준·자동차기준 등의 추가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 하여야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하고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계약취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입주지정 종료일 전까지 계약해지 신청하여야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할 센터에서 신청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갱신계약 가능(총 6년)하며 신청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자격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총 20년)이 가능합니다.(단독거주형 다가구 입주자만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갱신) - 임대차 기간 중에는 순위별 자격요건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 본 공고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며, 재계약 시점에 임대주택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희망하우징 포함)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나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계약 1회당 2년 거주 간주) - 계약은 보증금-임대료 전환 전의 금액으로 해야하며 계약 후~입주 전 센터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 기본(할증)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의 임대료 역전환은 불가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상환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대출여부 조회하여 대상자에게 별도통보하며 상환 증빙서류 제출)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p>입 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만 입실 가능합니다. -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타 청년 매입임대주택 포함)의 기 당첨자이거나 부모님이 서울 소재 임대주택 당첨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님이 서울 소재 이외 임대주택 당첨자인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다가구(공동거주형, 쉐어형) 주택의 경우 담보 설정 등의 이유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나 이는 공사 지침이 아니므로 관련 문의를 받지 않으며, 공사에서도 별도 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 및 면적) 수정 역시 불가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생 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으니 계약 전에 관할센터를 통해 관리비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거주형의 경우 관리비 등을 입주자간에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한명이 퇴거한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입주자가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전대·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현방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주소 (06336)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홈페이지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